

해 양 수 산 부

주의·통보 요구

제 목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소홀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경상남도 본청, 창원시, 사천시, 고성군, 남해군, 하동군, 함양군, 거창군

내 용

경상남도는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 등을 위해 매년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해양수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, 경상남도²⁰⁸⁾는 [표 1]과 같이 최근 3년간 해양수산부로부터 총 332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233,534백만원(연 평균 77,845백만원)을 교부받아 본청 및 해당 구·군에 예산을 배정하여 해양수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.

[표 1] 최근 3년간 경상남도 국고보조금 교부 현황 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사업건수	주요사업내용	국고보조금액
합계	332건		233,534
2013년	87건	수산물 위생관리 등	70,350
2014년	123건	수산물 위생관리 등	87,339
2015년	122건	수산물 위생관리 등	75,845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208) 태풍으로 인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통영시, 거제시, 양산시 는 감사대상에서 제외

다만,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대통령령²⁰⁹⁾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

또한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44조에 따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생활기반계정 및 경제발전계정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기획재정부 「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」에서 집행잔액 미활용시 다음 연도 지방재정 수입으로 편입해서는 안 되며, 국고에 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「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(기획재정부)」 12. 자치단체 보조사업 (7)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,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,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, 다만,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등의 경우²¹⁰⁾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209)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(보조금의 반환 등)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”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.

1.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
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
3.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
4.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
5.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

210)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다음의 경우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

1.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
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
3.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
4.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

따라서 경상남도 및 관할 시·군은 해양수산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해 관련규정 및 교부조건에 따라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사업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산정하여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.

그러나 경상남도 ○○○○사업소, ○○○○연구소 및 창원시 등 8개 시·군에서는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사업 시행완료 후 107건에 대한 집행잔액 3,155백만원과 보조금 발생이자 169백만원을 합하여 총 3,325백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.

조치할 사항 경상남도지사는

[통보] 금번 감사에서 제외된 관할 시·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가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경상남도지사, 창원시장, 사천시장, 고성군수, 남해군수, 하동군수, 함양군수, 거창군수는

[주의] 국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완료한 사업 예산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보조금관리 규정 및 교부조건 등에 따라 반납조치 하시기 바라며, 향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